의 안 번 호	제	호
의 결	20 .	
연 월 일	(제	회)

의 결 사 항

#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최기영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

법제처 심사 전

### 1. 의결주문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 국정과제 "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"의 세부 과제로,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사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,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작의 기금 지원 근거 마련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법률 제 호

##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방송 통신위원회규칙"을 "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.

- 4. 매출액 및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
- 1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- 2.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·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: 방송통 신위원회

제8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이용약관 등에 관한 의견제시(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된 시 청자위원회에 한정한다)
- 5.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의견제시(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

치된 시청자위원회에 한정한다)

-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1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- 2.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·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: 방송통 신위원회

제8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정부는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으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"를 "제88조제1항제1호, 제2호,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방송통신위원회"를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"방송통신위원회에"를 "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

- 1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- 2.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·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: 방송통 신위원회

제108조제1항제24호 중 "방송통신위원회"를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방송사업자의 수용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청자위원회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7조(시청자위원회) ①다음 각	제87조(시청자위원회) ①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	
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	
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	
두어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4. 매출액 및 가입자 수 등을 고
	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기준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
	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	②
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	
수 있는 자중에서 <u>방송통신위원</u>	<u>다음 각 호의</u>
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	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
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	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
촉한다.	
<u>&lt;신 설&gt;</u>	1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
	방송사업자 : 과학기술정보통
	<u>신부장관</u>
<u>&lt;신 설&gt;</u>	2.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
	자·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
	송사업자 및 상품소개와 판매
	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
	<u>방송사업자: 방송통신위원회</u>

#### ③ (생 략)

무)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• 2. (생략)

<신 설>

3. (생략) <신 설>

4. (생 략)

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 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다.

#### ③ (현행과 같음)

제88조(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 제88조(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 무) ①-----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이용약관 등에 관한 의견제 시(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된 시청자위원회에 한정 하다)
-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- 5.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의견제시(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된 시청자위원회에 한정하다)
- 6. (현행 제4호와 같음)
-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 다.
- 1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 방송사업자 :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
- 2.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 자·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

제89조(시청자 평가프로그램) ① 제89조(시청자 평가프로그램) ① ~ ③ (생 략) <신 설>

제90조(방송사업자의 의무) ①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 여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②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 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 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 송사업자 및 상품소개와 판매 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: 방송통신위원회

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정부는 「방송통신발전 기본 법」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 전기금으로 시청자 평가프로그 램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90조(방송사업자의 의무) ①--

----- 제88조제1항 제1호. 제2호.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

또는 시정요구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

----- 과학기술정

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 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

④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 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방 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 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 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⑤ (생 략)

제108조(과태료) ①다음 각 호의 제108조(과태료) ①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

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 원회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-----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----.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 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.

- 1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 방송사업자 :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
- 2.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 자·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 송사업자 및 상품소개와 판매 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: 방송통신위원회
- ⑤ (현행과 같음)

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다

1. ~ 23. (생 략)

24.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사항을 방송 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

24. ~ 27. (생략)

1. ~ 23. (현행과 같음) 24.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사항을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 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4. ~ 27. (현행과 같음)